

장기요양 이용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다사랑복지센터(이하 “기관” 이라 함)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대상]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3조[사업의 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 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 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식사, 이동 도움, 체위변경, 머리 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취사, 세탁, 청소, 정리정돈 등)와 정서 지원(말벗, 의사소통 등)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 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 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4조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추천
-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 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활동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 활동
-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 권유 등

제5조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 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 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 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라 함)”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제6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 자동연장’ 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제7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대상자 15% 의료, 경감대상자 : 60%, 40% 기초생활수급권자 : 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휴일가산(30%)	유급휴일가산(50%)	심야가산(30%)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22시~06시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48,690
나-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분 이상)	38,950

제8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1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